

제주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17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2. 9.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5519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64,396,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396,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원물반환 청구를 가액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 2015. 5. 14. 당시 C의 적극재산은 2,762,660,860원이고 소극재산은 3,290,000,000원과 원고의 채권액 16여 억 원을 합한 50여 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도 C는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7월과 8월에 모두 말소되었고 2017. 8.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결국 일부 청구로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64,396,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64,396,405원의 가액배상을 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주장과 반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제1심 원물반환 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